

외화대출 취급지침

- <2008. 1.24일 제정>
- <2008.11. 7일 제1차 개정>
- <2010. 4.28일 제2차 개정>
- <2010. 7. 1일 제3차 개정>
- <2016. 4.18일 제4차 개정>

1. 외화대출 용도제한의 기본방향(「외국환거래법무취급세칙」 제2-9조 설명)

- 2010.7.1일이후 외국환은행(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, 이하 외국환은행)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에 한하여 허용
 - 다만 중소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국내사용 용도의 외화대출을 허용하되 각 외국환은행별로 설정된 대출액 한도내에서 취급 가능
 - 각 외국환은행별 대출한도는 2010.6.30일 현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설정
- 상기에도 불구하고 2010.6.30일 이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취급(계약분 포함)한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
-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금 계정(외화대출, 외화표시원화대출, 기타 대출 중 거주자에 대한 대출분)과 대내외화사모사채에 대해 적용(<참고>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대상 참조)

2. 국내 수출기업의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 허용 (2008.10.27일 「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」 부칙 개정에 따른 용도제한에 관한 특례 사항 반영)

- 국내 수출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가능하나 이의 대환대출은 불허
 - ‘KIKO 등 통화옵션 거래’의 포괄범위는 KIKO 및 KIKO와 유사한 성격의 통화옵션* 거래로 2008.10.26일 이전에 체결된 통화옵션 계약중에서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(연체된 자금 포함)으로 한정
 - * Pivot, Snowball 및 기타 Target Forward를 포함(환변동보험 가입, 선물환거래 등 여타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결제자금이나 미래의 외화자금 흐름에 대한 환리스크 헤지 목적 등의 운영자금 대출은 허용대상에서 제외)
 - 외화대출 취급금액은 KIKO 등 기존 통화옵션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른 결제자금 소요범위(월별 분할결제 방식인 window형인 경우에는 매월 결제에 소요되는 금액)내로 하되 기존 통화옵션 계약을 청산할 경우에는 동 소요금액 전체에 대해서도 외화대출 취급이 가능
 - 타행과 KIKO 등 통화옵션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은 수출실적 증빙 및 용도의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가능

3-1. 용도제한 대상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제한 폐지(2008.12.1일 「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」 부칙 개정에 따른 조치 반영)

- 「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」 부칙(2008.12.1일자)에 의거 2007.8.10일 이전 취급된 외화대출과 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

- 각행의 내규에 따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기한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대환 또는 재대출 형태로의 취급은 불가능(2008.4.14일 「외화대출 취급절의에 대한 답변」 반영)

3-2. 한도내대출의 상환기한 연장 적용여부

- 용도제한 조치 이전에 외국환은행과 차입자간에 차입자가 특정 시점까지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외화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대출로서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, 상환기한 연장은 한도내대출 내에서 건별로 이미 실행된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상환기한 연장이 가능

- 한도내대출 약정상의 미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신규취급은 불가능

4. 중소기업체 시설자금 대출 취급

- 시설자금 대출금은 한국은행 「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」에 따라 운전자금과 구분되어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의 확인이 가능한 자금으로서 각 외국환은행의 장이 시설자금으로 인정한 자금임

- 기 취급한 원화시설자금 대출을 거래기간중에 외화시설자금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함

5. 타행 대환 대출 가능 여부

- 해외사용 실수요 및 중소기업체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타행 대환대출은 관계증빙 확인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허용

- 타행에서 취급된 수입 거래 결제(유산스 및 L/C 만기 결제용 등)를 위한 대출도 실수요 증빙을 갖출 경우 허용

6. 실수요 증빙의 인정 범위

- 대출실행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해외사용 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되 기업의 용도와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감안 그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함
 - 자금사용의 내역증빙 제출시기 등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각행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
- 차주가 이미 자기자금 등으로 미리 집행한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실제 시설자금 용도임이 확인되고 자금집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취급을 허용
- 실수요 증빙으로 사본을 징구하는 경우에는 이중대출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업무처리 내용을 명확히 기재
 - 거래증빙서류는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동 증빙상에 외화대출 실행사실 기재후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차주에게 반납
 - 거래행태 등에 따라 사전에 원본 징구가 어려운 경우는 차주로부터 이중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약서 등을 징구하고 사후 거래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사후관리

7. 외화대출 취급 은행과 해외 송금은행의 일치 여부

- 외화대출 취급은행이 해외송금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지정거래외국환거래 제도 등으로 특정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외화대출 취급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의 해외송금 허용

- 또한 외화대출 용도제한 취지를 감안하여 해외 결제용 대출자금은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외 직접송금을 의무화

8. 만기 재연장시 실수요 증빙 의무

- 최초 대출 취급시의 실수요 증빙으로 만기 재연장이 가능
 - 외국환은행은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유의

9. 국내 수입독점업체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

- 조달청이나 특정 독점업체의 수입을 통해서만 조달 가능한 일부 원자재 및 특정 물품의 구입을 위해 거주자간 외화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해외사용 실수요로 간주하여 외화대출을 허용
 - 외국환은행은 수입독점업체에 대한 독점관련 계약서와 해외 수출업자 및 수입업체에 대한 독점관련 계약서, 해외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독점권에 대한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관계 증빙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

10.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중소기업체 시설자금 대출

-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중소기업체 시설자금 외화대출 취급시 용도제한 조치의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외화대출 취급이 가능

11.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의 “은행간외화대출”에 포함 여부

- 증권사, 종금사 등 제2금융권 기관은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-2조의 외국 환은행(시행령 제14조 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 영업소)이 아니므로 “은행간외화대출”의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
- 외국환은행의 제2금융권에 대한 외화대출은 용도제한 적용 대상임

12. 대외결제 통화와 외화대출 통화가 다른 경우

- 대외결제(해외 실수요 증빙상) 통화와 외화대출 취급통화는 서로 상이하 여도 무관함
- 용도제한 대상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연장시 거래은행은 기존 대출계약상의 취급통화와 다른 통화로 기한연장(대환 또는 재대출이 아님) 가능

13. 보험가입자가 보험 약관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외화보험료를 담 보로 보험사로부터 외화대출을 받는 경우(보험계약대출)

-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도 외화대출 용도제한 대상이므로 해외 사용 실수요 목적자금 또는 중소기업체 시설자금이야 외화대출이 가능
- 다만,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 이전에 계약된 보험으로 보험계약대출 만 기가 남아있는 경우 만기까지 용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

14. 국내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앞 운영자금 송금

- 국내 본사가 해외 현지법인앞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외화대출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외사용실수요 자금으로 인정함

15. SPC에 대한 외화대출

-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설립된 SPC에게 외화대출하는 경우 외화대출의 용도규제 대상여부의 확인은 SPC의 자금용도를 기준으로 함

16. 신디케이션 외화대출 만기연장

- 신디케이션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시 전체금액의 증감에 관계없이 개별은행의 최초 대출금액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'만기연장'으로 인정하고, 최초 대출취급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'신규대출'로 취급하여야 함

17. 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」, 동 「절차」 및 「외화대출 취급지침」 등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의 처리 여부

-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용도제한 조치의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각행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하나, 명확치 않은 경우 한국은행(국제국 외환건전성조사팀)과 협의해야 함

18. 중소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서 제출

- 중소기업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한도내 사용 점검 등을 위한 '중소기업체 국내 시설자금 대출한도액 운용 보고서'(월보)를 기한(익월 7영업일내)을 준수하여 보고

<참고>

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대상

(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」 관련조항)

제2-7조 (정의) 이 절에서 “외화대출”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을 말하며, 「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」 <별표 4-1>의 「외국환 계정 회계처리기준」에 따른 “외화대출금” 외에 국제국장이 정하는 대내외화 사모사채를 포함한다.

제2-8조 (적용범위)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외국환은행이 「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전대
2. 한국수출입은행의 외화대출업무

제2-9조 (외화대출의 용도제한)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한 외화대출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
2.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은 2010년 6월 30일자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해당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잔액을 한도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국내 시설자금 용도의 외화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중소 제조업체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.

「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」 제2-7조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적용범위

외국환은행의 외화계정과목 ¹⁾	적용여부	비 고
I. 자산계정		
7. 외화대출금		
가. 외화대출	○	과거 외화여수신규정상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로 외환전산망상의 '외화대출상황월보'(FX5220) 보고 대상
나. 외화표시원화대출	○	
다. 전대차관자금대출	×	
라. 기타	×	비거주자에 대한 대출
	○	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이외의 대출
8. 은행간외화대출	×	
9. 외화사모사채	○	국내 발행 사모사채 취득 분
10. 내국수입유산스	×	